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409(CM)

특별약관

제1장 상해 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27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5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20년/3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9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1 │ 반려동물 양육자금 | (상해사망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반려동물 양육자금 I으로 지급합니 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반려동물 양육자금 I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 장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2】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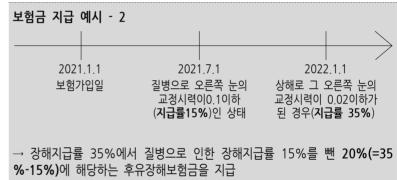
-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강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강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图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 를 차감한 10%(=30%-2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3. (특별약관의 소멸)

-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2]]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강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강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물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 강보험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 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상해 흉터복원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상해흉터복원수술이란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15만원]

구분	안면부	│ 상지 · 하지
지급액	수술 1cm당 30만원	수술 1cm당 15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 ③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등은 제외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용어 설계: 특성무위들 살라 없애는 것 품이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용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시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1 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 골절진단비(치아포함)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분류표([별표3]골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포함)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포함)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 |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골절분류 표([별표3]골절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골절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골절)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 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용어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품이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용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제2장 상해 및 질병 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27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5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20년/3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9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 (Cast)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제3장 비용손해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27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5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20년/3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9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 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지식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 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1심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② 위 ①의 소송은 소를 직접 제기하거나 소의 제기를 당한 경우에 관계없이 1심 소

- 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의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②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① 내지 ③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하도로 합니다.

구 분	변호사보수액	인지액 + 송달료
보상한도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500만원 한도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연간 하나의 사건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이송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① 내지 ③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 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별표4-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 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②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별표4-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 한 인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 ③ 대법원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별표4-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민사소송법률 비용손해)"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 ② 위 ①, 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위 ①의 각 호에 대해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 ②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③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③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⑤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교육을 시킨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③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 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①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 ⑧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 ⑩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 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③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세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 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
- 음 이의 합의의/에서 모임되는 근에가 돌용되는 용가, 피구모음에서 모용된 수 있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 (4) 환경오염, 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 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 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 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 ⑱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시

① 이혼소송, 상속분쟁 등 가족간의 민사소송의 경우

② 보험계약일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동법 제393조(항소의 취하),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동법

용어	정의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에 준용)에 따라 소(항소,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가족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4. (계약 후 알릴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해지)

-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4.(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이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7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타인을 위한 계약)

- ☐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욧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 합니다.

7. (손해의 발생과 통지)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 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②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 ③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의 ①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 ②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 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9. (보험금의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함 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푹이

공제계약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 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류(소장, 소송 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 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1.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10.(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 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 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 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용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 풀이 느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대위권)

-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 를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3. (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진행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 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 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 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위 ③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니다

1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제4장 반려동물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	서사전 참고	<u>1</u>	27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u> </u>	145

1 | 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거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ユ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이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부가설명	음식물

반려동물이 일상 생활 중 보호자 또는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이 원료와 가공품 및 부산물(뼈, 과일 씨 등 폐기 대상물질)을 말하며, 사람 및 다른 동물의 식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음식물의 상태(부패, 감염 여부 등)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15년만기 자동갱신

3.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의료비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보험금의 지급사유)①의 의료비보험금은 3.(보험금의 지급사유)①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아래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연간 총 보상한도액 1,500만원 의료비의 경우】

스스 서 리	수술 횟수	지급	
수술 여부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0만원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자기부담금
수술을 한 날의	연 2회 초과 시	120 1000	
경우	연 2회 이하 시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2,000만원 의료비의 경우】

스스 서 비	수술 횟수	지급	
수술 여부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5만원 / 30만원 중 보험증권에	
수술을 한 날의	연 2회 초과 시	기재된 일당 보상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자기부담금
경우	연 2회 이하 시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지급보험금의 계산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적용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과 일당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예시안내)

- · 일 보상한도액: 15만원,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 (예시1)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23만원, 수술하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 [(23만원 3만원) × 80%]과 15만원 중 적은 금액
- = 15만원

(예시2)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103만원, 수술한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 [(103만원 3만원) × 80%]과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80만원
- ② 반려동물이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위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

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④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절단

용어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풀이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6. (피보험자의 범위)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및 별거중인 미혼 자녀

문구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② 위 ①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⑦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⑨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⑩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⑫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 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 라리아감염증, 광견병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 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 약, 의약부외품 등)
- ①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 의료. 재활치료
- ②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⑩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⑰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사이토포 인트 등의 Lokivetmab 성분의 약물
- ③ 위 ②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②에서 정한 조치 (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②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 ③ 구강내 질환

8.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청구)

-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수술확인서, 입원치료확인서, 수의사처방전, MRI, CT 등 방사선 사진을 찍은 경우 해당 사진(촬영 날짜 및 시간 포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반려동물 개체식별을 위한 서류(등록증, 코사진 등)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인용 문구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 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 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9.(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①의 지급기일 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 신청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아래 ⑥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 연되는 경우
 -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위 ②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 풀이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4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위 2]에 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 ②의 보 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회사는 위 5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11. (지급보험금의 계산)

□ 동일한 반려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산식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피보험자가 부담한 총비용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따른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인용 문구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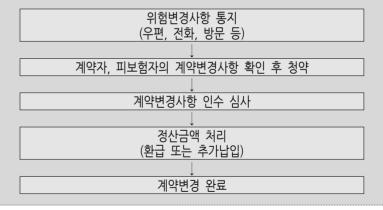
13.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 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반려동물을 양도할 때
 - ④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18.(특별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식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위 11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 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워래대로 지급합니다.



〈비례 보상 예시〉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3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 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원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3급 0.6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6) = 5천만원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1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④에 따라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용어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14. (알림 의무 위반의 효과)

-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2.(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13.(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 을 때
- ②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 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28.(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위 ①.①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 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5 위 1.2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는 13.(계약 후 알릴 의무) ④ 또는 5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④ 및 5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图 2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 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②의 최초계약으로 봅

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5.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6. (특별약관의 성립)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보통약관에 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용어 풀이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용어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17. (특별약관의 무효)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8. (특별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 ① 보험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④ 계약자, 피보험자
-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위 ①.⑤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28.(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

용어 풀이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 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⑤ 계약자가 위 ②의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①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 7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

- 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图 위 ①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만기(해약) 화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화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19.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반려동물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만 나이는 계약일 현재 반려동물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나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20. (특별약관의 소멸)

- □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이 담보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10.(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10.(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풀이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미경과보험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 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경과보험료라 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화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③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 멸되는 경우에는 27.(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21.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 지신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① 12.(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22.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용어 풀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3.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 최고(독촉)기가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용어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풀이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위 ①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대하여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 ①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인용 문구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③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28.(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4.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① 23.(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별 약관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부활(효력회복)

용어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② 위 ①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12.(계약 전 알릴 의무),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5.(사기에 의한 계약), 16.(특별약관의 성립) 및 21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12.(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4.(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단, 3.(보험금의 지급사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보험금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25.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18.(특별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①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 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5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위 ①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풀이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6.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28.(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7.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28.(해약화급금) ①에 따른 해약화급금을 지급합니다.

28.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 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화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29.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 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 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 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② 갱신일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만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위 ①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② 및 ③에 의하여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30.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23.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 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1. (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32. (의무보험과의 관계)

-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1.(지급보험금의 계산)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3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 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 반려동물 의료비 II (확장보장) (MRI,CT,내시경)(연간1회한)(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를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 의료비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을 이 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의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이란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3.반려동물 의료비॥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4.반려동물 의료비॥ 치과및구 강질환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5.반려동물 의료비॥ 특정피부약물치 료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 의료비॥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5 위 1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상은 연간 1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상 금액은 1. ①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보상금액)의 계산〉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 의료비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예시안내)

• 보상한도액 50만원,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

(예시1)

- 피보험자가 영상검사(MRI)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318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지급한 보험금 : 1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318만원 - 15만원 - 3만원) × 80%]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50만원

(예시2)

- 피보험자가 영상검사(MRI)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68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지급한 보험금 : 1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68만원 - 15만원 - 3만원) × 80%]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40만원
- ③ 반려동물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3. ("영상검사(MRI,CT,내시경)"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상검사(MRI,CT,내시경)"라 함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 흥촬영(CT) 및 내시경 검사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자기공명영상(MRI)"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 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컴퓨터단층촬영(CT)"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③ 위 ①의 "내시경 검사"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내시경을 이용 하여 비침습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식도', '위' 또는 '장'에 시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영상진단법

컴퓨터단층촬영(CT)

x선을 투과시켜 그 흡수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신체의 단면영상을 얻거나 3차원적인 입체영상을 얻는 영상진단법

내시경

내장장기 또는 체강(體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게 만든 의료기구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⑦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⑨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⑩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⑫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 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 라리아감염증, 광견병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 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 약, 의약부외품 등)
- (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 의료, 재활치료
- ②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 거비용
- ③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⑭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⑥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⑰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이 담보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 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10.(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10.(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 ③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27.(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 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 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3 | 반려동물 의료비비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1.반려동물 의료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④의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위 ①의 사고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 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 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4 | 반려동물 의료비비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④의 ②, ③에도 불구하고,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구 강 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1.반려동물 의료비॥(실 손)(갱신형) 특별약관』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 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 반려동물 의료비II 특정피부약물치료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1.반려동물 의료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의 ⑱에도 불구하고, 특정피부약물치료로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1.반 려동물 의료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특정피부약물치료라 함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시행한 치료를 말합니 다.
 - ①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anse inhibitor) 약물
 - ② 사이토포인트 등의 Lokivetmab 성분의 약물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 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 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6 │ 반려동물 의료비삐(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Ⅱ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이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부가설명	음식물	

반려동물이 일상 생활 중 보호자 또는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이 원료와 가공품 및 부산물(뼈, 과일 씨 등 폐기 대상물질)을 말하며, 사람 및 다른 동물의 식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음식물의 상태(부패, 감염 여부 등)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15년만기 자동갱신

3. (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의료비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의료비보험금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아래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연간 총 보상한도액 700만원 의료비의 경우】

수술 여부	수술 횟수	지급		
구철 역구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0만원		
수술을 한 날의	연 2회 초과 시	120 1000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자기부담금	
경우	연 2회 이하 시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00만원 의료비의 경우】

스스 서비	수술 횟수	지급		
수술 여부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을 하지 않은 <u>-</u> 날의 경우		1일당 15만원		
수술을 한 날의	연 2회 초과 시	150 1355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자기부담금	
경우	연 2회 이하 시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지급보험금의 계산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적용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과 일당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예시안내)

- · 일 보상한도액: 15만원,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 (예시1)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23만원, 수술하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 [(23만원 3만원) × 80%]과 15만원 중 적은 금액
- = 15만원

(예시2)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103만원, 수술한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 [(103만원 3만원) × 80%]과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80만원
- ② 반려동물이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위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

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④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절단

용어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풀이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6. (피보험자의 범위)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및 별거중인 미혼 자녀

문구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② 위 ①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⑦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⑨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⑩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⑫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 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 라리아감염증, 광견병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 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 약, 의약부외품 등)
- ⑪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재활치료
- ②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 거비용
- ®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④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⑩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⑰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사이토포 인트 등의 Lokivetmab 성분의 약물
- ③ 위 ②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②에서 정한 조치 (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②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 ③ 구강내 질환

8.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청구)

-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수술확인서, 입원치료확인서, 수의사처방전, MRI, CT, 내시경 등 영상 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진(촬영 날짜 및 시간 포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반려동물 개체식별을 위한 서류(등록증, 코사진 등)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의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 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 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9.(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①의 지급기일 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 신청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아래 ⑥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 연되는 경우
 -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위 ②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 풀이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위 ②에 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 ②의 보 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하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위 ⑤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11. (지급보험금의 계산)

□ 동일한 반려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산식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피보험자가 부담한 총비용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따른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인용 문구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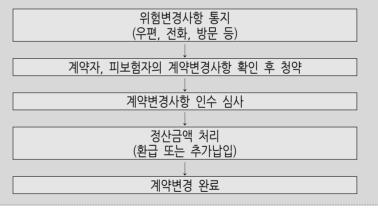
13.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반려동물을 양도할 때
 - ④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18.(특별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신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위 11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 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워래대로 지급합니다.



〈비례 보상 예시〉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3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 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원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3급 0.6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6) = 5천만원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1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④에 따라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용어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14. (알림 의무 위반의 효과)

-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2.(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13.(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 을 때
- ②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 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28.(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위 ①.①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 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5 위 1.2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는 13.(계약 후 알릴 의무) ④ 또는 5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④ 및 5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图 24.(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 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②의 최초계약으로 봅

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5.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6. (특별약관의 성립)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보통약관에 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반려동물이 이 특별약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풀이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용어 풀이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17. (특별약관의 무효)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8. (특별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 ① 보험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④ 계약자, 피보험자
-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위 ①.⑤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28.(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

용어 풀이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 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⑤ 계약자가 위 ②의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①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 7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

- 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图 위 ①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만기(해약) 화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화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19.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반려동물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만 나이는 계약일 현재 반려동물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나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20. (특별약관의 소멸)

- □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이 담보에서 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10.(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10.(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풀이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미경과보험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 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경과보험료라 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③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 멸되는 경우에는 27.(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21.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 지시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① 12.(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22.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용어 풀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3.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 최고(독촉)기가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용어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풀이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위 ①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대하여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 ①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인용 문구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③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28.(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4.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① 23.(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부활(효력회복)

용어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② 위 ①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12.(계약 전 알릴 의무),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5.(사기에 의한 계약), 16.(특별약관의 성립) 및 21.(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12.(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4.(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평균공시이율

용어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단, 3.(보험금의 지급사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보험금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25.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18.(특별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①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 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5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위 ①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풀이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6.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28.(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7.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28.(해약화급금) ①에 따른 해약화급금을 지급합니다.

28.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 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화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29.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 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 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 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② 갱신일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만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위 ①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② 및 ③에 의하여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30.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23.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 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1. (자동갱신 적용)

-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32. (의무보험과의 관계)

-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1.(지급보험금의 계산)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3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 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 반려동물 의료비삐(확장보장) (MRI,CT,내시경)(연간1회한)(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 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를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을 이 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의 반려동물 의료비삐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이란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삐(실손)(갱신형) 특별약관』, 『8.반려동물 의료비삐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9.반려동물 의료비삐 치과및구 강질환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0.반려동물 의료비삐 특정피부약물치료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 의료비Ⅲ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5 위 1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상은 연간 1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상 금액은 1. ①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Ⅲ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보상금액)의 계산〉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 의료비Ⅲ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예시안내〉

· 보상한도액 50만원,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

(예시1)

- 피보험자가 영상검사(MRI)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318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Ⅲ에서 지급한 보험금 : 1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318만원 - 15만원 - 3만원) × 80%]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50만원

(예시2)

- 피보험자가 영상검사(MRI)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68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Ⅲ에서 지급한 보험금 : 1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68만원 - 15만원 - 3만원) × 80%]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40만원
- ③ 반려동물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3. ("영상검사(MRI,CT,내시경)"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상검사(MRI,CT,내시경)"라 함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 층촬영(CT) 및 내시경 검사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자기공명영상(MRI)"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 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컴퓨터단층촬영(CT)"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내시경 검사"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내시경을 이용 하여 비침습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식도', '위' 또는 '장'에 시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용어 풀이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영상진단법

컴퓨터단층촬영(CT)

x선을 투과시켜 그 흡수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신체의 단면영상을 얻거 나 3차원적인 입체영상을 얻는 영상진단법

내시경

내장장기 또는 체강(體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게 만든 의료기구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⑨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①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⑩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 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 라리아감염증, 광견병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③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 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 약, 의약부외품 등)
- (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 의료, 재활치료
- ②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 거비용
- ③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④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⑥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⑰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5. (특별약관의 소멸)

- □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이 담보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 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삐(실손)(갱신형) 특별약관』10.(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10.(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 ③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삐(실손)(갱신형) 특별약관』 27.(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실 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 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8 │ 반려동물 의료비Ⅲ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통약관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 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④의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위 ①의 사고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실 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 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9 │ 반려동물 의료비Ⅲ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④의 ②, ③에도 불구하고,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구 강 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 손)(갱신형) 특별약관』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실 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 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1O │ 반려동물 의료비Ⅲ 특정피부약물치료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의 ⑱에도 불구하고, 특정피부약물치료로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6.반 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특정피부약물치료라 함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시행한 치료를 말합니 다.
 - ①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anse inhibitor) 약물
 - ② 사이토포인트 등의 Lokivetmab 성분의 약물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삐(실 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삐(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 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반려동물 장례지원비로보상하여 드립니다.

장례지원비	지급금액		
	경과기간	지급금액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가입금액의 100%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④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⑤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
- ⑦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⑧ 위 ⑦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⑩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4. (특별약관의 무효)

이 계약의 반려동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반려동물 장례지원비에 대한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 (갱신형) 특별약관』 26.(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 (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1.(지급보험금의 계산), 32.(의무보험과의 관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하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이하 '장묘업체'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 장례 중 발생한 장례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에 대해 아래 반려견 구분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반려견 구분은 견종별 평균 무게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려견 구분	보상한도
소형견	40만원
중형견	50만원
대형견	60만원
 초대형견	100만원

② 위 ①의 장례비용은 장묘업체에서 정의하는 기준장례비용에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화장비용)을 더한 금액에 70%를 곱한 비용을 말합니다.

- 3 위 2의 기준장례비용이란 반려동물 장례 중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기준장례용품(기본유골함, 보자기, 기본 국화, 기본 나무관, 기본 수의에 한합니다.)에 대한 장례비용(최소 무게 기준)을 말하며 최대 50만원한도로합니다. 단, 기능성유골함, 고급수의(보), 추모보석 제작, 고급 케이스, 고급 특수관, 꽃다발, 리무진이용, 산골, 납골당 등 기준장례용품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항목들은 기준장례비용에서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5 위 1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인용

이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염습

용어 풀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잔변이나 잔뇨 및 혈흔을 깨끗하게 닦는 행위 추모예식

반려동물의 안녕을 빌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예식 화장

고열로 사체를 태워 사체의 유기물은 제거하고 유골만 남기는 과정

〈예시안내〉

(예시1)

- · 소형견 5KG 기준
- 기준장례비용 : 0~5kg 기준 60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60만원 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X 70% 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 = 35만원

(예시2)

- · 중형견 15KG 기준
- 기준장례비용 : 0~5kg 기준 60만원
-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 : 5KG초과 시 1KG 당 1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60만원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15KG-5KG) × 1만원/KG] × 70% 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 42만워

(예시3)

- ·대형견 35KG 기준
- 기준장례비용 : 0~5kg 기준 60만원
-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 : 5KG초과 시 1KG 당 1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60만원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35KG-5KG) × 1만원/KG] × 70% 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 = 56만원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

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④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⑤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⑦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⑧ 위 ⑦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⑩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장례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메모리얼 스톤, 루쎄떼 등 추모보석 제작 비용
 - ② 고급특수관, 고급 케이스, 기능성 유골함, 고급 수의(보) 등 기준항목 외 추가 적으로 발생하는 용품 비용
 - ③ 리무진 이용, 산골, 납골당, 반려동물 픽업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반려동물 사망이 확인 가능한 장례 입증서류(동물장례확인서, 화장증명서, 장례비 세부계산서 등)
- ③ 장묘업체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구성 및 가격공시 자료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⑤ 반려동물 개체식별을 위한 서류(등록증 등)
-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지급보험금의 계산)

□ 동일한 반려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금액을 초과할 때에 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산식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피보험자가 부담한 총비용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따른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이 계약의 반려동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반려동물 장례지원비에 대한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 (갱신형) 특별약관』26.(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 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 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13 | 반려동물 배상책임!!(대물포함)(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 (개)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 ②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킨 경우
- ② 위 ①의 "반려동물(개)"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②의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② 피보험자가 12.(손해방지의무) ① ①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의 피보험자가 12.(손해방지의무) ①②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②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13.(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및 ③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⑥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⑦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⑧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⑪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⑪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⑭ 가입 반려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⑤ 가입 반려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4. (의무보험과의 관계)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6.(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 험자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 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5.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 ①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③, ④ 또는 ⑩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⑤ 또는 ⑧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① 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2 위 1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보험금의 지급사유)①.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①.②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기준	5백만원	5백만원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1천만원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	2천만원	1천만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3천만원	

③ 위 ①의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보험금의 지급사유)①.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①.②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기준	3만원	3만원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3만원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	10만원	10만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10만원	

6.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 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해지)

-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5.(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6.(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7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8. (타인을 위한 계약)

- □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 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0.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1. (손해의 발생과 통지)

- 기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① 내지 ③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③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경우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및 ②의 ⑤ 또는 ⑧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 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위 ①.①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위 ① ②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위 ①③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1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 및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③ 반려동물 개체식별을 위한 서류(등록증, 코사진 등)
- ④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⑤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5.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14.(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 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 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 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용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보험금의 분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 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공제계약

욧어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 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7. (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8.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 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 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 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9. (조사)

- □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 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 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

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 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보험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식 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 손)(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 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및 12.(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위탁비용은 반려동물 위탁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1.(보험금의 지급사유) 1의 입원기간은 피보험자의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상해입원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위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6 1.(보험금의 지급사유)①의 위탁비용은 반려동물 위탁 시 수탁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하며 추가 식대, 용품 구매 등의 비용은 제외한 기본 비용에 한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반려동물 개체식별을 위한 서류(등록증, 코사진 등)
 - ⑤ 수탁기관 위탁비용 영수증 및 동물위탁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계약서(위탁관리업 소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관리동물 종류, 품종, 나이, 서비스 기간, 비용 등 포함)
 -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보험금의 비례분담)

- □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위탁비용에 대하여 위탁비용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위탁비용 및 각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②에 의해 계산된 각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탁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 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 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위탁비용 × <u>각 계약별 보상책임액</u>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7.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